

문서번호	자치행정과-77
호	91
결재일자	2016.3.31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보도여부	

★주무관	자치행정팀장	자치행정과장	행정관리국장
정윤경	김준영	정주영	03/31 고한석
협 조			

-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-  
선거인명부 확정 계획

2016.3.30.

강 북 구  
(자치행정과)

- 제20대 국회의원선거 -  
**선거인명부 확정 계획**

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인명부 작성 후 확정(4.1) 전까지 사망자, 선거권없는자, 오기자, 누락자의 구제 등에 대한 처리사항을 점검하여 선거인명부를 확정하고자 함.

## I 추진일정

-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처리 : '16. 3. 27(일) ~ 3. 29(화) [3일간]
- 선거인명부 누락자 구제 : '16. 3. 30(수) ~ 3. 31(목) [2일간]
- 선거인명부 확정 : '16. 4. 1(금)
- 확정된 선거인명부 인터넷 열람 : '16. 4. 2(토) ~ 4. 13(수) [12일간]

## II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·누락자 구제

-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인터넷 열람
  - 열람기간 : 2016.3. 27(일) ~ 3. 29(화) [3일간]
    - 인터넷 열람시간 : 열람기간 중 24시간
  - 선거인명부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(공고된 장소)에서 열람 실시
  - 인터넷열람은 강북구 홈페이지에 열람기간 동안 등재
    - 등재시간 : 선거인명부 3. 27(일) 0시 ~ 3. 29(화) 24시
    - 확정된 선거인명부 4. 2(토) 0시 ~ 4. 13(수) 18시
- 이의신청 심사·결정 및 선거인명부 정리
  - 신청기간 : 2016. 3. 27(일) ~ 3. 29(화) [3일간]
  - 신청권자 : 선거권자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의 신청 가능
  - 신청방법 : 구술·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
  -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·결정 : 신청일의 다음날까지 심사 결정·통보
    -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 : 선거인명부를 수정하고 신청인과 구선관위에 통지
    -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 : 신청인과 구선관위에 통지

## 불복신청 심사·결정 및 선거인명부 정리

- 신청기간 :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·결정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
- 신청권자 : 이의신청 심사·결정에 불복이 있는 이의신청인이나 관계인
- 신청방법 : 구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
- 심사·결정기간 :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
  -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 : 구청장에게 통지하여 명부수정 및 신청인에게 통지
  -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 : 신청인과 구청장에게 통지

## 선거인명부 누락자 등의 구제

- 구제기간 : 2016. 3. 30(수) ~ 3. 31(목) [2일간]
- 신청권자 및 신청방법
  - 행정착오 등의 사유로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경우, 누락된 선거권자 또는 구청장이 구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 (주민등록표등본 등 소명자료 첨부)
- 구선관위에서는 신청이 있는 다음 날까지 결정하여 구청장 및 신청인에게 통지
  -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 : 구청장에게 통지하여 명부수정 및 신청인에게 통지
  -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 : 신청인과 구청장에게 통지

## III

### 선거인명부 수정

#### 1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[3.22~3.26]

##### 선거인명부 수정 불가

- 단,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해 누락된 자가 거소투표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만 등재 위해 명부 수정 가능

#### 2 선거인명부 확정 전 [3.30~3.31]

##### 오기, 선거권 없는 자, 사망자, 이중등재자 등 삭제(감)

- 전산처리 : [9341.선거인명부열람] 업무에서 '직권정정'으로 수정
- 명부수정
  - ① 자체가 남도록 두 줄로 삭선처리
  - ② 『비고』란에 사유 및 연월일 기재 후
  - ③ 구청장 사인날인

④ “선거인명부 수정상황통보서” 작성하여 자치행정과에 통보

**오기사항(주소 등), 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 정정(정정)**

○ 전산처리 : [9341.선거인명부열람] 업무에서 ‘직권정정’으로 수정

○ 명부수정

① 자체가 남도록 오기된 글자만 두 줄로 삭선처리 후 정정

② 『비고』란에 사유 및 연월일 기재 후

③ 구청장 사인날인

④ “선거인명부 수정상황통보서” 작성하여 자치행정과에 통보

**이의신청, 불복신청에 의한 추가등재(증)**

○ 전산처리 : [9341.선거인명부열람]에서 ‘이의신청’ 또는 ‘불복신청’으로 수정

○ 명부수정

① 해당 투표구 선거인명부의 마지막페이지 하단 공란서식에 수기 기재

② 『비고』란에 사유 및 연월일 기재 후

③ 구청장 사인날인

④ “선거인명부 수정상황통보서” 작성하여 자치행정과에 통보

### **3 선거인명부 확정 후 [4.1~4.12]**

**오기, 선거권 없는 자, 사망자, 이중등재자 등 발견시**

○ 전산처리 :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하므로

**전산처리는 하지 않음.**

※ 거소투표신고인명부의 경우 :

그때마다 지체없이 ‘확정 후 오기사항 통보서’를 작성하여 자치행정과에 통보

※ 선거인명부의 경우 :

① 선거인명부 확정 후(4.1)부터 사전투표기간 만료일(4.9)까지

- ‘확정 후 오기사항 통보서’ 자치행정과 통보

② 사전투표기간 만료일(4.10)부터 선거일 전일(4.12)까지

-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선관위시스템에서 거소투표정보를 반영한

선거인명부 출력(4.10)후의 수정사항은 명부 『비고』란에 기재

- ‘확정 후 오기사항 통보서’ 자치행정과 통보

## IV

## 행정사항

 선거인명부 확정상황 보고 철저 : 동 주민센터

- '수정상황통보서' 작성하여 통합메일(정윤경) 제출 : 2016. 4. 1(금) 16:00까지(예정)
- 확정상황통보서 및 기타통보서 전산작성 : 작업시간 추후 별도공지
- 확정 후 변동사항 발생시마다 '확정 후 오기사항통보서' 작성하여 18시까지 통합메일(정윤경) 송부

 전산장애 발생시 및 선거인명부 인터넷 열람 시스템 운영지원 : 정보화지원과

- 확정된 선거인명부 인터넷열람 : 2016. 4. 2(토) 0시 ~ 4. 13(수) 18시
- 투표구역도 제공서비스 실시
- 인터넷열람 기간 종료 후 화면 및 자료 완전 삭제

 선거인명부 확정상황 자체점검후 점검표 제출

- 제출일시 : 2016. 4. 1(금) 19:00까지 자치행정과 팩스 (901-6108) 송부
- 점검내용 : 붙임1) 자체점검표 참조

붙임 1. 선거인명부 확정상황 자체점검표 1부.

2. 수정상황통보서 서식(3/30~3/31 명부수정시 작성) 1부.

3. 확정 후 오기사항 통보서 서식(4/1~4/12 명부비고란 기재시 작성) 1부.

## 선거인명부 확정상황 자체점검표

【확인동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】

확인자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인)

구 분	확 인 사 항	확 인 결 과
선거인 명 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신고인명부 말미서식 작성상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신고인명부 끝부분서식(1)~(3)항 모두 작성과 직인날인 여부</li> </ul> </li> </ul>	날인(    ) 누락(    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선거권없는자의 미등재여부</li> </ul>	적정(    ) 부적정(    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선거인명부 등재자 수와 확정상황통보서 선거인수 일치 여부</li> </ul>	일치(    ) 불일치(    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확정상황통보서의 “남, 여, 계”와 기타통보서의 “남, 여, 계” 일치 여부</li> </ul>	일치(    ) 불일치(    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확정상황통보서의 거소(선상)투표자수와 3.27일 확정된 거소(선상) 투표자수 일치 여부</li> </ul>	일치(    ) 불일치(    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확정상황통보서의 직권수정(감) 및 이의신청(증)(감)건수가 수정상황통보서와 일치여부</li> </ul>	적정(    ) 부적정(    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수정상황통보서의 직권수정(감) 명부삭선처리 및 비고란에 사유·년월일 기재후 구청장사인 날인 여부 (오기사항 수정 포함)</li> </ul>	적정(    ) 부적정(    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수정상황통보서의 이의신청(증) 선거인명부 투표구별 마지막 페이지에 공란서식에 명부등재자 삽입 여부 및 비고란에 사유·년월일 기재후 구청장사인 날인 여부</li> </ul>	적정(    ) 부적정(    )